
2025년도 「지역 방송 AI 제작역량 강화」 AI 제작 실증 지원 사업 수행 안내서

2025. 7.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지원 조건	4
III. 신청 방법	8
IV. 심사 및 평가	10
V. 사업관련 의무 준수사항	15
VI.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19
VII.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20
VIII.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22
참고. AI 실증 제작 공모 RFP(제안요청서)	23

I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방송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저효율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AI 미디어 솔루션 활용·확산 지원
- 2025년 지역 방송 AI 솔루션 교육에서 습득한 AI 솔루션의 현장 적용을 통해 지역 방송사 내 AI 제작 기반조성

□ 지원 대상

- 2025년도 주최한 지역 방송 AI 솔루션 교육을 수료한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제주’ 지역 소재 방송사업자
 ※ 제작 인력에 해당 교육과정 수료생 참여 필수

구분	방송사
부산·경남	KBS부산, KBS울산, KBS진주, KBS창원, 부산문화방송, MBC 경남, 울산문화방송, KNN, UBC울산방송, JCN울산중앙방송, LG헬로비전 부산
광주·전남	KBS광주, KBS순천, KBS목포, 광주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KBC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CMB광주방송, GGN글로벌광주방송
대구·경북	KBS대구, 대구문화방송, 티비씨, KT HCN 새로넷방송, LG헬로비전 대구
제주	KBS제주, 제주문화방송, JBS제주방송, KCTV제주방송

□ 지원 규모

- 총 320백만원 / 8개 사업자 선정(1개社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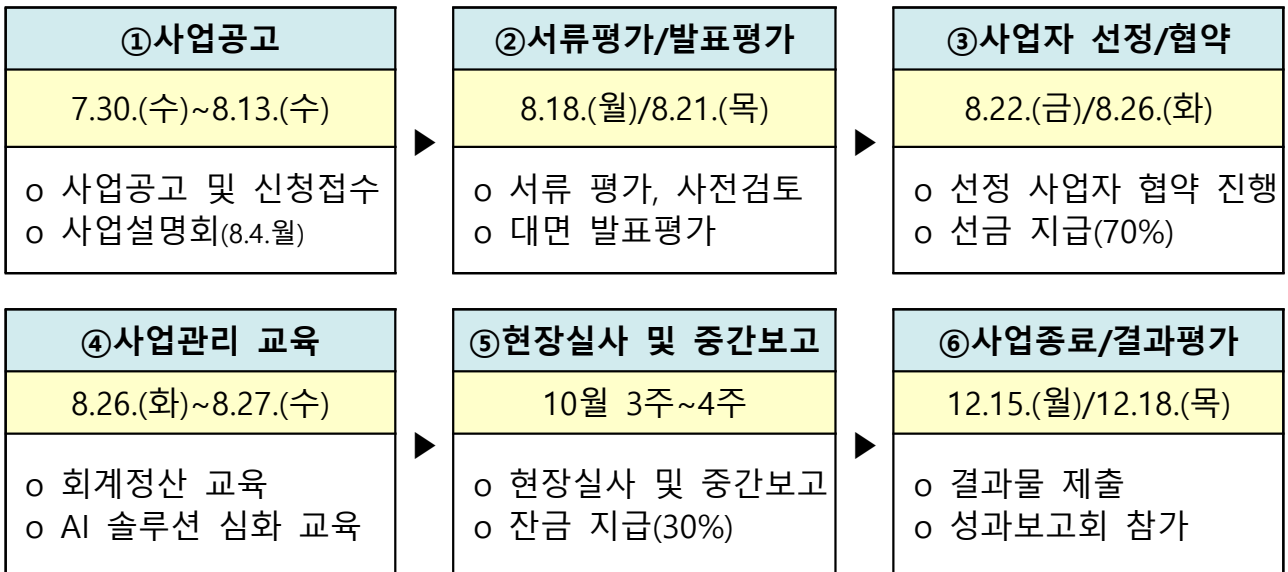
- AI 솔루션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 실증 제작

< 주요 내용 >

지원부문	실증분량	지원금	자부담금	주요 내용
토크쇼	100분 이상 (2회차이상)	최대 40백만원	지원금의 20%* *현물현금 가능 단 자부담금의 50% 이상(4백만원) 현금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솔루션 활용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시사·교양, 보도, 정보프로그램 등 토크쇼 형식 프로그램(파일럿 및 기방영작 등)
음악방송/공연	50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솔루션 활용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AI 솔루션 활용 뉴미디어 직캠 제작 지원 ○ 공연, 지역축제 등 음악 프로그램(파일럿 및 기방영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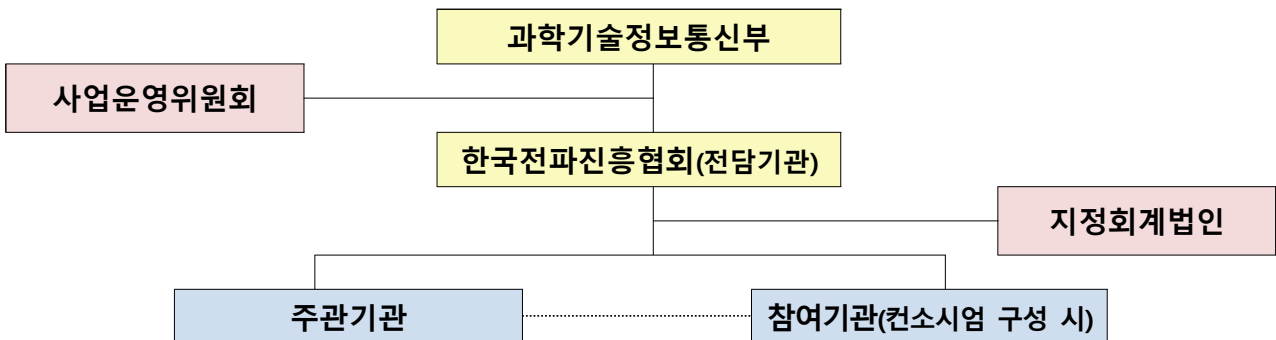
※ [21P 참고] 지역 방송 AI 제작역량강화 [AI 제작실증] RFP 참조

□ 주요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 상세 안내 예정

□ 지원체계 및 주요역할



구 분	주요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과 관련된 정책 수립
사업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기관 협약 변경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사업 결과물의 중간평가, 결과평가
한국전파진흥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기획·공고·선정평가·협약 등 ○ 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감독
지정회계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회계감사 ○ 예산편성 및 사업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안내
사업 수행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 사업 수행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II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방송사업자이며, 제작사는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2025년도 지역 방송 AI 솔루션 교육 참여 지역인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제주’ 이상 4개 지역 소재 방송사업자
 - ※ 제작인력에 해당 교육과정 수료생 참여 필수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사업자에 한함

□ 지원 제한 대상

- 지방비(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공공기관 등)외 타 부처, 진흥원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기관)인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경우
10.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 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추진이 중단된 경우
11.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제작 지원 조건

- 본 공모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AI 솔루션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함
 - 제작지원금의 40% 이상을 AI 기술 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반드시 책정해야 함(제작 장비, AI솔루션, AI제작 인력 등)
 - 방송 프로그램 예고편 영상(최대 30초)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작하여야함
- ※ 이 외 제작 조건은 지원 부문별 RFP(제안요청서) 참고
- 동일 법인 사업자 1개사는 부문 구분 없이 최대 2편까지 신청가능함
 - ※ 동일 법인의 종된 사업자로 참여한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로 간주함(일련번호가 있는 경우)
- 2025년도 지역 방송 AI 솔루션 교육 수료생이 실증 제작 인력으로 참여한 경우, 참여 인원수에 따라 최대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함

< 교육 수료생 참여도 배점 >

수료생 수	2명	3명	4명 이상
배점(5점 만점)	3점	4점	5점

-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송출 세부 조건으로 방송해야함

< 송출 세부 조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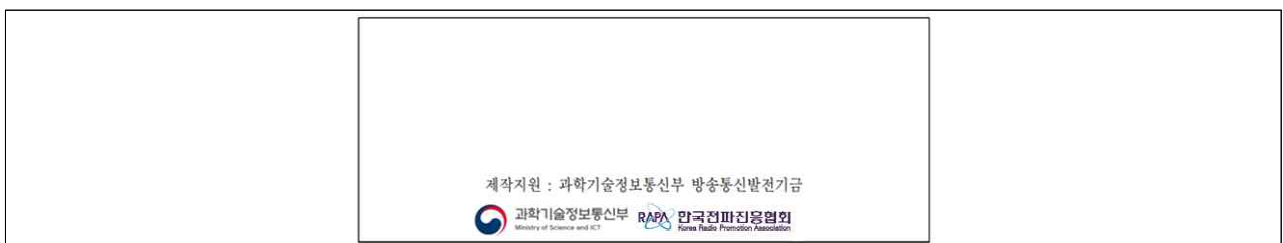
구분	세부 조건
토크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HD(해상도 1920×1080) 이상 신청사 방송 송출 ○ 실증 분량 100분 이상 / 2회차 이상
음악방송/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HD(해상도 1920×1080) 이상 신청사 방송 송출 ○ 실증 분량 50분 이상 ○ 직캠 편집본 온라인 송출

-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 및 연출 책임자는 해당 사업기간 동안 주관 사업자 소속만 가능하며, 주요 제작진(제작책임자, 연출책임자, 메인작가 등)은 동 사업자 제작에만 참여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사업기간(~'25.12.15.)까지 최종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이 필수이며, 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금 일체를 환수 또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제작 지원 고지의무를 지켜야 함

< 제작 지원 고지 조건 >

구 분		세부 내용
TV	고지시간	○ 방송 시작 전 + 종료 시(자막 고지)
	지원표기 문구	○ (문구) 제작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 협찬고지 등과 병기 금지
	자막고지 방법	○ (위치) 화면 하단(중앙) ○ (크기) 전체화면의 1/4 이상 ○ (노출시간) 각 2초 이상
	기타	○ 방송 프로그램 예고편 영상도 동일하게 적용
온라인 플랫폼	고지시간	○ 콘텐츠 송출 시작 전 + 종료 시(자막 고지)
	지원표기 문구	○ (문구) 제작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 협찬고지 등과 병기 금지
	자막고지 방법	○ (위치) 화면 하단(중앙) ○ (크기) 전체화면의 1/4 이상 ○ (노출시간) 각 2초 이상
기타		○ 방송 프로그램 예고편 영상도 동일하게 적용

< 제작 지원 고시 적용 예시 >



□ 회계감사 및 평가 조건

- 지원 대상 사업자는 정산보고 기간 전까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함
- 회계감사 비용은 해당 프로그램 총 제작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개별 회계감사 수감은 불인정함(회계법인 지정후 확정수수료 통보 예정)

단위(원)

총 제작비(원)	회계감사수수료(변동가능)		
	원가	부가가치세	합계
50백만원 미만	545,455	54,545	600,000

※ 컨소시엄 지원인 경우, 참여기관수에 따라 가산금 책정될 수 있음

-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지원 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프로그램 및 결과보고서 등 제작 지원 결과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차 기년도 감점 부여와 제작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별도로 정함

- 지원 과제 의 진도 및 현황관리, 성과, 집행내역 점검 등을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결과 보고 시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제작 인력의 만족도, 시청률 등 성과 조사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Ⅲ 신청 방법

□ 제출처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사업 담당자 메일 접수
 - (e-나라도움) www.bojo.go.kr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이메일 접수) joo@rapa.or.kr *메일 제목 [지역 방송 AI 실증 공모]
- ※ 두 방식 모두 제출 필수로, 기타 우편, 택배 등 접수 형태 불가함
- ※ 신청 완료 전 지원 부문을 반드시 확인(제출기간 종료 이후 수정 불가)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5. 7. 30.(수) ~ 2025. 8. 13.(수), 15:00까지

□ 제출 서류

번호	구분	제출형식	양 식	비고
①	사업신청서	PDF	붙임1	
②	사업수행계획서	HWP	붙임2	
③	사업자 및 참여인력 현황표	HWP	붙임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붙임4	
⑤	신청사항 정리표	EXCEL	붙임5	
⑥	컨소시엄 협약서	PDF		별도양식없음
⑦	과제책임자 증명 서류	PDF		별도양식없음
⑧	사업자등록증 ¹⁾	PDF		
⑨	법인등기부등본	PDF		
⑩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PDF		별도양식없음
⑪	표준재무제표 ²⁾	PDF		
⑫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PDF		
⑬	기관확인서(대기업/중소기업 등)	PDF		
⑭	AI 솔루션 교육 수료증	PDF		

1)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가 신청사 주소와 상이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표**를 반드시 제출 해야함

2) 최근 3년 자료 제출로, 홈텍스 발급본만 인정함

※ 컨소시엄 신청 시 ⑥ ~ ⑬ 서류는 주관 및 참여기관 각각 제출해야함

□ 지원 시 유의사항

- e-나라도움 신청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발생한 시스템상 오류 등에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책임은 없음
- 발표평가 준비 자료는 대상자에 한해 서면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관련 규정 및 사업 수행지침 등을 반드시 숙지하며 신청하여야함

□ 문의처

제작지원 관련

- 연락처 : (02)317-6053 / E-mail : joo@rapa.or.kr

e나라도움 관련

- 연락처 : 1670-9595, (02)6676-5100

※ 사용자 매뉴얼 :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 : https://www.youtube.com/channel/UC4l7bPHm2h_nC3dyi6M-r3g

IV 심사 및 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의 공정성, 객관성 및 지원사업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방송 미디어 산·학·연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5~7인 내외로 구성

□ 심사방법

가. 평가 방법은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구 분	평가방법	주요 내용
서류평가	서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목적*, 추진체계, 추진방법 및 내용 등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창의성 및 충실성 등 평가하며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 선정 * AI 기술 활용 계획, AI 솔루션 교육 수료인원 참여도 등 교육과정에 부합해야함
발표평가	대면 발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과제의 책임자, 연출자 등 인터뷰 실시 ○ 사업추진 주체의 과제 수행 능력 평가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과제 선정

- 서류 및 발표평가 모두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총점 중 최고 및 최하 점수 1개씩을 제외한 합계로 평균 점수를 산출함

※ 우수 콘텐츠 지원을 위해 종합점수 70점 미만 콘텐츠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동점 발생시, 높은 배점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선정함

- 제작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적합성 검토하여 지원금 조정

※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제작비 과다 산출 시 감액조정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정안 미수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대상 지원자를 선정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상이하거나, 미비한 경우 심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되며, 차 순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주관기관 총괄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가 1일전까지 공문 제출 필수
- 발표평가 당일 총괄 책임자가 발표하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 평가로 대신하나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사업자에 있음

□ 평가 기준

- 토크쇼 부문

평가구분	구 분	내 용	배점
서류 평가	제작 계획의 우수성(20)	○ 기획의 창의성 및 구성의 독창성	20
	제작 계획의 실현 가능성(35)	○ 기획, 촬영, 후반제작 등 단계별 구체성	15
		○ 제작 기술력 및 전문성	15
		○ AI 솔루션 교육 수료인원 참여도(가점배정*)	5
	AI 기술 활용 전략(35)	○ 지정된 AI 기술 적용 우수성	25
		○ 지정된 AI 기술 외 등 타 기술 연계 여부	10
	제안 내용 완성도(10)	○ 제출 자료의 완성도(RFP 제시 항목 포함 여부)	10
합계			100
발표 평가	제작 계획의 우수성(30)	○ 소재의 참신성 및 구성의 독창성	20
		○ 시청자 콘텐츠 흡인력 강화	10
	제작 계획의 실현 가능성(25)	○ 제작 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가능성	15
		○ 제작 수행 능력(TV 편성 시간)	10
	AI 기술 활용 전략(35)	○ 지정된 AI 기술 연계 프로그램 구성	25
		○ 지원 사업을 통한 AI 활용 제작 환경 조성 계획	10
	제안 내용 완성도(10)	○ 발표 자료의 완성도, 기획의도 전달력	10
합계			100

○ 음악방송/공연 부문

평가구분	구분	내용	배점
서류 평가	제작 계획의 우수성(20)	○ 기획의 창의성 및 구성의 독창성	20
	제작 계획의 실현 가능성(35)	○ 기획, 촬영, 후반제작 등 단계별 구체성	15
		○ 제작 기술력 및 전문성	15
		○ AI 솔루션 교육 수료인원 참여도(가점배정*)	5
	AI 기술 활용 전략(35)	○ 지정된 AI 기술 적용 우수성	25
		○ 지정된 AI 기술 외 등 타 기술 연계 여부	10
	제안 내용 완성도(10)	○ 제출 자료의 완성도(RFP 제시 항목 포함 여부)	10
합계			100
발표 평가	제작 계획의 우수성(30)	○ 소재의 참신성 및 구성의 독창성	20
		○ 시청자 콘텐츠 흡인력 강화	10
	제작 계획의 실현 가능성(25)	○ 제작 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 가능성	15
		○ 제작 수행 능력(온라인 직캠 송출 계획)	10
	AI 기술 활용 전략 (35)	○ 지정된 AI 기술 연계 프로그램 구성	25
		○ 지원 사업을 통한 AI 활용 제작 환경 조성 계획	10
	제안 내용 완성도(10)	○ 발표 자료의 완성도, 기획의도 전달력	10
합계			100

* AI 솔루션 교육 수료인원 참여도 가점

수료생 수	2명	3명	4명 이상
배점(5점 만점)	3점	4점	5점

□ 협약 체결

-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작지원사 선정, 과업 범위 및 예산 조정을 통한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 진행
- 협의를 통한 조정 불가 시 해당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 성과 평가

-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사업 경과 및 결과물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과제 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가. 사업 수행관리(상시)

- 과제 수행현황 관리
 - 과제 추진현황 보고 수시진행 및 중간·결과 보고 실시
 - ※ 필요시 사업 추진현황에 관해 확인 및 요청할 수 있고, 제출시기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상 조정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미보고 또는 보고 지연 시 최종결과 평가에 반영하여 향후 동사업 지원 시 패널티 부여 가능

나. 중간보고(10월, 보고서 및 현장실사)

- 중간보고서 제출 및 현장점검을 통해 제작 진행 경과 및 계획, 예산 집행률 및 적정성 등 검토
- 중간보고 결과, 예산 집행률 저조, 수행계획 달성 여부 불투명 등 사업수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잔금

지급 시기를 연기하거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구분	내 용
제출시기	~ '25. 10. 24.(금)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joo@rapa.or.kr)
제출서류	① 중간보고서 1부 ② 기타 증빙자료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최종평가(12월, 발표평가)

- 제작사의 제작책임자(사업PM) 또는 연출자 발표
 -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공문 제출 후, 사업 참여인력(책임급) 발표 대체 가능
- 성과발표 결과에 따라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시상
-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는 등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구분	내 용
제출시기	~ '25. 12. 15.(월)
제출방법	e-메일 제출 : joo@rapa.or.kr
제출서류	① 최종 영상 주요 스틸컷 3~5장(고해상도, jpg) ② 별도 평가용 자료 1부 ③ 제작된 최종 영상 콘텐츠 ※ 파일타입 MP4 또는 MOV / 화면비율 16:9 / 화면사이즈 1,920x1,080

V 사업관련 의무 준수사항

□ 사업 운영 관리

- 제작지원 콘텐츠의 진도 및 현황 관리, 추진 실적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콘텐츠 제작품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 워크샵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회계정산 교육은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결과 보고 시 제작지원으로 인한 성과 및 만족도 조사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양식 별도 제공 예정)

□ 회계 관리

- 제작지원금 불인정 최소화 및 회계정산 교육 효과를 위해 월별 정산 실시, 지원금 집행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월별로 e나라도움에 등록해야함
- 제작지원 집행 건에 대하여 정산 보고 기간 전까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제작사 개별 회계감사 수감 및 관련 비용 집행은 불인정함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신청 기간

- 수행기관은 사업 또는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행 이전에 변경 내역을 승인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 및 통보 완료 건에 대해서만 집행가능
- 모든 예산변경 승인 신청 및 통보는 집행마감 기한 종료 1개월 전 (11월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계획의 변경은 아래의 신고 또는 승인 사항에 대해 필요성과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공문과 변경 신청 양식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야 함
 - ※ 변경승인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e나라도움 및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사업변경 신청

구 분	내 용
변경신고	1. 수행기관 참여인력 또는 연락담당자 변경 2. 사업비 세목간 변경 (단, 자부담금 및 총 사업비 변경 불가) 3. 기타 사업수행 관련 경미한 변경 사항
변경승인	1. 사업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의 변경 2. 지원과제 최종목표의 변경 3. 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및 여비의 세목간 변경 (단, 자부담금 및 총 사업비 변경 불가) 4. 사업비의 운영비의 20% 이상 증액 5.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6. 기타 사업수행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

□ 유통 및 저작권

구 분	내 용
수상 및 유통 실적보고	○ 국내·외 수상 및 유통실적 등 사업성과를 다음 기준에 따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후 유선 통보(02-317-6053) ※ 매년 2월 말까지 2년간 제출(추후 누락사항 발견 시 제재 가능) ○ 지원과제 관련 보도자료 게시 전 전담기관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보도자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받았다는 문구 포함
무상사용	○ 지원받은 콘텐츠의 권리는 수혜기업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필요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활용 및 이용 가능
저작권	○ 지원 대상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대본(구성안)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거나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수혜기업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적용 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기금사업 관련 지침,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부과하는 사업수행지침서 및 제작지원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작 지원 대상 콘텐츠의 내용은 분야별 관련법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 계획과 부합되어야 함

- 제작지원 대상 사업자는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제작 유통에 있어 방송 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방송영상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방송 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근로, 하도급, 업무위탁)표준계약서’ 등을 준수해야 함

□ 지원조건 및 사업수행지침 등 위반 시 제재

- 허위 영수증 제출·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 이후 제작을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차기 연도에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단, 협약이전 포기 사업자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작 중단 또는 포기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업자는 예외)
- 전담기관이 필요할 경우, 진행상황 및 집행실태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협약 조건 위반 및 집행을 등이 저조할 경우, 지원의 취소 또는 기지원금의 반환, 일정기간 동 사업에 대한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거나, 기존 작품을 재구성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협약서 내에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예정된 예산 항목 및 금액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기타 법령의 위반으로 인한 보조금 사업 ①참여제한, ②보조금의 반환(이자 포함), ③제재부가금 및 기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참고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VI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 협약 체결

-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작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약 서류

구 분	내 용
제출방법 및 기간	추후 공지
제출서류	① 협약서 2부 ② 신청서 및 최종 사업수행계획서 ③ 사업자 및 참여인력 현황표 ④ 참여인력 재직증명서(제작책임자 및 연출책임자) ⑤ 보안서약서(사업 참여 내부인력 모두) 및 청렴이행각서(제작책임자만)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 참여 내부인력 모두) ⑦ 선금교부신청서(선금 70% 신청) ⑧ 계좌입금신고서 ⑨ 자체부담금 약속서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⑪ 사업자등록증 ⑫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법인에 한함) ⑬ 인감증명서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⑭ 제작지원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잔금 신청

구 분	내 용
제출방법 및 기간	추후 공지
제출서류	① 잔금교부신청서(잔금 30% 신청) ② 제작지원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중간평가에서 부과된 이행조건 만족 시 잔금 지급

Ⅶ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구성해야함
 - 지원금 규모 : 320백만원
 - 8개社 지원하여 1개社당 40백만원 이내 지원함
 - ※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금은 지원금의 20%로 책정하도록 함
 - 그 중 현금 50% 이상, 나머지는 현물(인건비 등)로 책정해야함

□ 사업비 편성

- 총사업비 내 산정 가능한 예산 항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비·세목을 구분하며, 신청 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만 편성 가능함
 -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 지원금은 과제를 위한 직접 비용(운영비, 여비 등)만 인정하며, 간접 비용(내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자산 취득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금 내 예산 편성 비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함

< 예산 편성 기준 >

비목	세목	주요 산정기준	편성 비율
인건비	보수	○ 방송사 소속 참여인력 내 정규직 임금 산출	자부담금의 50% 이하 편성
	상용임금	○ 방송사 소속 참여인력 내 계약직 임금 산출	
운영비	일반수용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제작지원금의 40% 이상을 AI 기술 활용을 위한 비용 책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임차비	○ 촬영 장비 및 장소 임차료 등 ○ AI 소프트웨어 임차비 등	
	기타	○ 공공요금 및 제세, 유류비 등	
여비	국내여비	○ 사업인력의 시내·외 출장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 소요 회의비	

※ 비·세목별 세부 산정기준은 [별첨1] 참조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제작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 교부, 제작비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함
-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에 해당사업의 수행 내용, 제작비 통장 및 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함
- 총 제작비는 직접적으로 제작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총 제작비 중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해야 함
- 제작지원 대상 사업자는 당해 총 제작비(제작지원금+자부담금)을 관리하는 1개의 통장(법인명의)을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함
 - ※ 잔액이 0원이고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통장만 사용이 가능하며, 조건에 해당하는 통장이 없을 시 신규로 개설
-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제작비 비목 간 20% 이상 변경의 경우, 사업 운영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 정산 시에는 총 제작비 집행 잔액, e나라도움 발생이자, 불인정금액 등을 포함한 전액 반납

□ 제작비 증빙·관리 원칙

- 협약 후 월별로 증빙자료 스캔본 일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불인정하는 제작비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은 소득세(제작비 인정) 등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사업목적에 맞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총 제작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상기 금액을 초과한 제작비 소요계획은 불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변경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요청
 - ※ 세목 별 증빙서류는 [별첨2] 참조

VIII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처리 절차

(1) 보조사업자(제작지원 대상 사업자)의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 ▶ 협약 시 제출한 예산서에 따라 e나라도움으로 보조사업비 집행
-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등록
- ▶ 보조사업자는 제작비 집행 완료 후 e나라도움 집행마감(별도 안내)

(2) 지정회계사는 회계감사 실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 사업수행지침과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회계법인 검증
- ▶ 각 집행 건에 대해 e나라도움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집행정보 검증
- ▶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 ▶ 회계법인 정산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발송하고 보조사업자는 결과확인 후 최종 정산결과 확정
- ▶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3) 전담기관의 정산결과내용 e나라도움 등록

- ▶ 전담기관에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산결과 등록, 정산금액 산정

(4) 보조사업자의 불인정금액·잔액·이자 반납

-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정산보고서 작성 후 전담기관에 제출
- ▶ 전담기관은 정산보고서 검토 후 최종 승인
-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반납대상 금액 반납

□ 반납대상 금액

- 총 제작비(제작지원금+자체부담금) 집행 잔액, e나라도움 가상계좌 발생이자, 불인정 금액의 총액

참고

지역 방송 AI 제작역량강화 [AI 제작실증] RFP

과제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콘텐츠 제작	
1.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및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장에서는 高퀄리티 영상 확보와 시간/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분야로 AI 적용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 다양한 AI 솔루션이 개발·도입되고 있으나, 제작부터 송출까지의 기간이 짧고 안정성이 중시되는 지역 방송 환경에서는 적용 및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이를 위해 버티고 솔루션, 생성형 AI(미드저너클링), PTZ 카메라, 8K 카메라 등 AI·신기술 기반 제작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교육성과를 현장에 적용·확산 하기 위해 실증 지원 추진 ○ (필요성) AI 제작 기술 교육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지역 방송사의 저비용 고효율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및 송출 플랫폼 확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정형화된 작업에는 AI를 활용하여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의성과 연출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 인력을 집중배치하여 제작비와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동시 달성 - 실증을 통한 성공사례 확보로 지역방송의 AI 제작 역량 내재화 및 확대 적용 기대 		
2.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방송사 교육 이수 인력을 중심으로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실증 제작 ○ 기존 방영 프로그램의 AI 제작 전환 또는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형태로 실증 진행 ○ 실증을 통해 지역방송사의 AI 기술 적용 역량 강화 및 현장 노하우 축적 		
3. 제작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소기술 활용) AI 프레이밍(추적, 크롭 등), AI자동편집, 생성형 AI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① 버티고 솔루션 활용 필수 - 필수②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이 30초 이상 활용된 실증 프로그램의 △예고편, △SPOT, △타이틀 등 제작 필수(택1) ○ (해상도) FHD(1920×1080)급 이상 ○ (기술활용 예산비율) 제작지원금의 40% 이상을 AI 기술 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반드시 책정해야 함 (제작 장비, AI솔루션, AI제작 인력 등) ○ (AI 활용 비교표 제출) 제작 전후 워크플로우를 기준으로 한 AI 적용 전후 비교표 작성·제출 필수 ※ 양식 참조 ○ (기술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內 AI등 요소기술 적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술적용 RFP]		
구분	토크쇼 부문	음악방송(공연) 부문
콘텐츠 내용	○ TV 정규편성이 가능한 지역 프로그램 또는 지역 특화 파일럿 프로그램	○ TV 또는 OTT 송출이 가능한 지역 축제, 공연 등 음악 프로그램
실증분량	○ 100분 이상 / 2회차 이상	○ 50분 이상 / 1회차 이상

구분	토크쇼 부문	음악방송(공연) 부문
콘텐츠 포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디오 또는 야외 기반 대화형 콘텐츠 ※ 4인 이상의 패널 등장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이 있는 공연 포맷 콘텐츠 ※ 움직임이 있는 군무 무대 필수 구성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프레이밍(크롭 or 추적) 기술 적용 ○ 사업 기간 내 방송 송출(지상파, 지역 채널, 케이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프레이밍(크롭 or 추적) 기술 적용 ○ 사업 기간 내 방송 송출(지상파, 지역 채널, 케이블 등) ○ OTT용 직캠 영상(최소 1종) 별도 제작 및 자체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송출
활용기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프레이밍을 통한 자동 컷 분할 및 피사체 추적 ○ 다중 출연자 중 발연자 자동 식별 후 메인 화면 구성 ○ AI 기반 실시간 자막 및 전환 ○ 생성형 AI로 시각 자료·세트 그래픽 구성 ○ PTZ 카메라로 무인 멀티앵글 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프레이밍을 통한 자동 컷 분할 및 피사체 추적 ○ 가사 자막 자동 생성, 장면 전환 ○ 생성형 AI로 무대 배경/비주얼 구성 ○ 직캠 영상(OTT/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시 고해상도 제공 등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 (사업기간) ~ 25.12.15.
- (정부지원금) 최대지원금 4천만원
- (매칭비율) 정부지원금의 20% 이상(현금 50%이상 필수)
- (지원대상) 지역 소재 방송사업자 (AI제작 교육 이수자 대상)

5. 지원 조건 및 신청시 참고사항

- 정부(부처) 또는 협회에서 공익적 목적이나 국내·외 전시 등 진행 시 참가 협조
- 제안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확장 제안 및 위 조건에 대한 수정 제안도 가능
-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기술 활용 및 제작 과정, 결과물에 대한 세부 보고서 제출 필수
- 제작 결과물은 지역방송사의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사업 홍보 및 AI 활용 사례로 공개 가능
-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지원 규모, 편수, 제작 계획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